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26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이건태·김문수·박지혜

민형배 • 이성윤 • 민병덕

양문석 · 김재원 · 정성호

김성환 · 박희승 · 김기표

권칠승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허락을 받아 열람, 등사한 형사 사건의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싶어도 현행 규정에 의해처벌 받을까 두려워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남용을 비판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국회,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검찰은 현행법 위반을 이유로 변호인을 압수수색 하거나 수사, 기소하고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 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증거 기록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외에도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공공의이익을 위하여 공무원,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처벌수위도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와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검찰이피고인과 변호인을 통제,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6조의16).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의16제1항 중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를 "다음 각 호의 경우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1천만원"으로,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한다.

- 1.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하는 경우
- 2.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언론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금지) ① 피고인 또	등의 남용금지) ①
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	
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	
의 사본을 <u>당해 사건 또는 관</u>	<u>다음 각 호의 경우</u>
런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	<u>가</u>
<u>이</u>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1.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하는 경우
<u><신 설></u>	2.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
	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u><신 설></u>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무
	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u><신 설></u>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언론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	2

하의 <u>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u> <u>원-----과태료를 부과한다</u>. 의 벌금에 처한다.

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u>1년</u> 이 -----<u>1천만</u>